

-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-

2022년 제10차 전문위원회 회의록

회의일시	2022.10.26.(수)~10.27.(목)		진행방법	서면심의																		
주관부서	연수구청 복지정책과		회의기록	전담직원																		
참석자	위원장 : 최윤희 / 부위원장 : 박진하 위 원 : 김성희, 김혜미, 윤옥선, 윤종만, 최성남 < 위원정수 7명 중 7명 참석 >																					
안건	◆ 제1안 : 긴급복지지원 심의(안) ◆ 제2안 :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(안) ◆ 제3안 : 민관협력사업 선정 및 배분요구 심의(안)																					
회의내용	◆ 제1안건-긴급복지지원 심의(안) : 12건 <table><tr><th colspan="4">내용 및 요청사항</th><th>결과</th></tr><tr><th>대상자</th><th>심의사항</th><th>종류</th><th>위기사유</th><th rowspan="2">원안 가결</th></tr><tr><td>12</td><td>연장 9 적정성 3</td><td>생계 의료</td><td>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•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• 주소득자가 사망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•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•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</td></tr></table> ☞ 심의 의견 및 답변 <table><tr><th>전문위원회 의견</th><th>부서의견</th></tr><tr><td> 1-1 -기준에 종사한 직종 취업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자활사업 참여 적극 권유 필요 1-2 -무급으로 주방보조 지속하는 것보다 다른 곳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? 그러지 않는 이유는? 현재 생활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? 1-3 -장기개입 계획/이사 등 고려 필요 -위기사유 수정 필요 1-10 -지원해야 하는 가정인가? 자가 처분하면 부채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? 과다 </td><td> 1-1 -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으며,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함. 1-2 -예전에 주방업무에 미숙하였던 신청인의 배우자를 고용주가 구제차원에서 교육시키면서 고용함. 그때의 도움으로 무급이어도 근로하고 있었음. 고용주는 현재 대출 신청하여 대출완료 되면 급여 지급해주시기로 하였고, 급여 다 받고 인수인계 끝내게 되면 그만두고 다른 곳 구직 활동할 예정임. 현재는 지급받은 긴급생계비로 생활중임. 1-3 -대상자 긴급주거비 지원받아 이사 예정임. -대상자의 위기사유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 3에 명시된 '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'임. 1-10 </td></tr></table>				내용 및 요청사항				결과	대상자	심의사항	종류	위기사유	원안 가결	12	연장 9 적정성 3	생계 의료	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•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• 주소득자가 사망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•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•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	전문위원회 의견	부서의견	1-1 -기준에 종사한 직종 취업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자활사업 참여 적극 권유 필요 1-2 -무급으로 주방보조 지속하는 것보다 다른 곳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? 그러지 않는 이유는? 현재 생활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? 1-3 -장기개입 계획/이사 등 고려 필요 -위기사유 수정 필요 1-10 -지원해야 하는 가정인가? 자가 처분하면 부채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? 과다	1-1 -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으며,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함. 1-2 -예전에 주방업무에 미숙하였던 신청인의 배우자를 고용주가 구제차원에서 교육시키면서 고용함. 그때의 도움으로 무급이어도 근로하고 있었음. 고용주는 현재 대출 신청하여 대출완료 되면 급여 지급해주시기로 하였고, 급여 다 받고 인수인계 끝내게 되면 그만두고 다른 곳 구직 활동할 예정임. 현재는 지급받은 긴급생계비로 생활중임. 1-3 -대상자 긴급주거비 지원받아 이사 예정임. -대상자의 위기사유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 3에 명시된 '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'임. 1-10
	내용 및 요청사항				결과																	
	대상자	심의사항	종류	위기사유	원안 가결																	
	12	연장 9 적정성 3	생계 의료	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•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• 주소득자가 사망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•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•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	
	전문위원회 의견	부서의견																				
1-1 -기준에 종사한 직종 취업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자활사업 참여 적극 권유 필요 1-2 -무급으로 주방보조 지속하는 것보다 다른 곳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? 그러지 않는 이유는? 현재 생활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? 1-3 -장기개입 계획/이사 등 고려 필요 -위기사유 수정 필요 1-10 -지원해야 하는 가정인가? 자가 처분하면 부채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? 과다	1-1 -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으며,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함. 1-2 -예전에 주방업무에 미숙하였던 신청인의 배우자를 고용주가 구제차원에서 교육시키면서 고용함. 그때의 도움으로 무급이어도 근로하고 있었음. 고용주는 현재 대출 신청하여 대출완료 되면 급여 지급해주시기로 하였고, 급여 다 받고 인수인계 끝내게 되면 그만두고 다른 곳 구직 활동할 예정임. 현재는 지급받은 긴급생계비로 생활중임. 1-3 -대상자 긴급주거비 지원받아 이사 예정임. -대상자의 위기사유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 3에 명시된 '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'임. 1-10																					

전문위원회 의견	부서의견
채무로 볼 수 있는가? 사기 가해자로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하는 것이 적절한가? -대상자의 경우 긴급생계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짐 1-12 -소유한 금융재산으로 의료비 부담이 불가능한 것인지? (금융재산 약 9백만원, 청구 의료비 약 150만원?)	-현재 상용가능한 금융재산 6,265천원가량 밖에 안되며, 공탁금 해결을 위해 대출 많이 받아 상환의 부담이 큰 상황임. 신청인 본인도 사기피해자이고, 이로 인해 가해자가 된 것으로 실제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음.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로활동하고 있으며, 배우자도 구직활동 중임.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각지대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기에 긴급복지 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짐. 1-12 -신청인의 소득·재산은 SOS긴급지원에 적합하며 중한 질병에 의한 긴급한 치료 필요하였기에 위기사유로 적합하여 지원 가능함.

◆ 제2안건-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(안) : 25건

내용 및 요청사항			결과
가구수	가족수	심의사항	원안 가결
25	40	•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상태 • 멸실인정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반영	

☞ 심의 의견 및 답변

전문위원회 의견	부서의견
2-4 -자녀가구 생활실태 동구 통해 파악 필요하지 않은지? 2-10 -모자 2인가구로 표기되어 있는데 가구원 수는 1? 모자가구 여부 확인 필요	2-4 -신청인의 가족관계 단절된 자녀들은 전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로 관리되고 있음. 2-10 -신청인과 자로 구성된 모자 2인가구로 가구원 수 2이나 1로 오기입됨.

◆ 제3안건-민관협력사업 선정 및 배분요구 심의(안) : 1건

내용 및 요청사항	결과
2022년 연수구 김장한마당	원안 가결
행사일시 2022.11.11.(금) 오전 11시(예정)	
사업내용 김장담그기 행사 및 저소득층 가정에 김장김치 나눔	
심의요구사업비 4,100천원(구 연합모금)	

☞ 심의 의견 및 답변

전문위원회 의견	부서의견
-매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테이블/마감재/천막 등은 기존 물품 활용 불가능한 것인지? 매년 새롭게 구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? 재활용한다면 200만원 이상 비용 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? -2022 연수구 김장한마당 진행을 완제품/반제품(행사)로 나누어 진행 계획하고 있음. 보여주기 행사보다는 (그림은 좋으나) 코로나 시국, 감기환자 증가, 완제품의 경제성 고려 등을 할 때 구입품을 배분하는 행사로 진행 제안함. -대상자 선정 방법(추천 등)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함. -배분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타부처 등과 사전 확인·협의해 주시면 좋을 듯함.	-테이블, 천막은 새로 구비하는 물품이 아닌 행사 당일 대여하는 품목이며, 마감재, 우비 등은 일회용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입니다. 후원금을 사용하는 행사이니만큼,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수구 화합 및 나눔의 장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음. -기부문화 활성화 및 나눔의 장 마련의 측면에서 이번 행사를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사 이후 평가회를 통해 내년도 사업 계획 시 구입품 배분 행사 등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음. -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중 독거노인, 가정위탁가정 등 직접 김장을 담그지 못하거나 지원해 줄 가족이 없는 세대를 발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함. -지원 중복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기관 자체 행사를 통한 지원대상자 및 대상자 추천 명단을 받아 동행정복지센터 명단에 제외 및 포함 시켜 배분할 예정임.

공지사항

- ◆ 2022년 제11차 전문위원회 회의
- 일시 : 2022년 11월 24일(목) 예정